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3
------------	----

제출연월일 : 2006년 11월 13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이유

- 각 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경제특별도 위상에 맞는 활발한 기업투자가 촉진되도록 현행 기업이전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을 수도권만이 아닌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도내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기업에도 지원하기 위한 근거마련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 20인 이내(안 제3조 내지 제8조)
- 기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활용(안 제10조)
 - 컨설팅사, 기업관련 기관, 투자유치 전문회사 등
 - 충청북도투자자문단 구성 : 30인 이내
- 투자진흥기금 설치(안 제13조 내지 제17조)
- 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안 제27조) ※ 현행처럼 지급
- 타 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안 제 28조)
 - 본사이전 :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투자금액의 5%, 2억원까지 지원
 -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 : 토지매입비 및 공장시설 등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5% 범위안에서 50억원까지 지원
- ※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 각각 2억원까지 지원

○ 도내공장 증설시 지원(안 제29조)

- 토지매입비 또는 기존공장 부지에 공장건축과 시설설치시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5% 범위안에서 50억원까지 지원

○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 (안 제30조)

- 대상 : 도내 낙후지역의 지방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 방법 :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투자유치위원회 심의후 지정
- 지원 : 토지금액 및 공사시설 금액의 20% 범위안에서 추가 융자 지원

○ 지원한도(안 제 32조)

- 이전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고용보조금 : 50억원(기업당)

○ 특별지원(안 제33조)

-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한 범위 초과하여 지원 가능

○ 시·군의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분담(안 제34조)

-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정함

○ 투자유치 성공 보상(안제38조)

- 대상 : 민간인 및 공무원, 단체, 전문가

3. 의안전문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 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 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2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이전기업”이라 함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말한다)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하 “타 시·도”라 한다)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충청북도내(이하 “도내”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7.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8.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9. “개별입지”라 함은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10.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서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 나.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11.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3. “보조사업”이라 함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을 도내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 등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국내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역경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종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문화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도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의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도내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기업투자 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관련 과장으로 한다.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외국인 투자진흥관 설치)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의 민원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외국인투자진흥관을 둔다.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외국인기업투자 유치관련 과장이 되며, 「외국인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 한다.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등) ① 도지사는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 전문회사·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와 기업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 할 수 있으며, 협약체결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투자정책의 수립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기업투자 유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충청북도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은 30인 이내의 자문관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관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통할한다.

제11조(경비의 지원) 자문단 소속의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참석수당과 국내·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는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투자유치 지원) 도지사는 도내 시·군의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투자진흥기금의 설치 운용

제13조(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①도지사는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기타 잡수입

③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내기업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2. 국내기업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3. 기타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 세부적인 기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도 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예치관리 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기금 출납원은 국내기업 투자유치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② 기금의 집행은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제1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지방세 감면) 도지사는 법 제9조에서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입지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고용보조금 지원) ①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4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①도지사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2조제5항에서 정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및 제32조를 준용 한다.

제26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 대금에 대한 분할납부 등과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27조(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 도지사는 별표 1의 수도권내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타 시 · 도 기업 이전비 지원) ①도지사는 타 시 · 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별표 2의 지원기준에 의거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도내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본사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 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건축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될 경우 투자금액의 5% 범위안에서, 제3호에 해당 될 경우 3년간 임대료의 50퍼센트까지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신규건물 건축시 :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2. 기존건물 취득시 : 건물취득비
3. 건물임대시 : 임대료

③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연구소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시설장비 구입 및 이전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도내공장 증설시 시설투자비지원) 도지사는 도내 소재 공장이 별표 2의 지원기준에 의거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신규증설의 경우 : 토지매입(임대료), 건축비, 시설설치비 포함
2. 기존공장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 건축비, 시설설치비 포함

제30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 ①도지사는 이전기업의 도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기업투자 촉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 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이전기업이 기업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 하는 경우 토지매입 금액 및 공사시설 금액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추가 용자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타 시·도 이전기업의 준용) 도지사는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이나 국내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되, 최고지원 금액이 각각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지원한도) 제28조의 타 시·도 이전보조금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은 기업당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도지사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3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1. 1일 상시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300억 이상 투자기업
2. 기타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6장 보 칙

제34조(시·군의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분담 등) ①도지사는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시·군의 투자유치 실적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이 분담하는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5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도지사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①도지사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거나, 용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 한 때
 6.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7.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8.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용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①도지사는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

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7조의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수도권내 대상지역(제27조 관련)

구 분	대 상
수 도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연수구 송도 매립지* 제외)<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도매립지는 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 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파동·이파동·삼파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위 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낙후지역”은 제외

【별표 2】

타 시 · 도 기업이전 및 도내공장 증설 지원기준(제28조 관련)

구 분	대 상	지원기준 및 지원업종
타시 · 도 기 업	<p>◆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중 별표 1을 제외한 지역 및 시·도에 소재한 기업</p>	<p>○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및 타 시 · 도에서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 (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등기 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p>○ 이전기업 대상 및 규모</p> <p><본사 및 공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의 전부(본사 또는 공장) 또는 일부가 (본사 또는 공장)이전하는 경우 상시 고용 인원이 50인 이상 <p><기업부설연구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고용규모가 50인 이상, 이전후 고용규모 30인 이상 <p><문화산업 및 연구 · 개발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고용구모가 30인 이상, 이전후 고용규모 30인 이상 <p>※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72(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 관련업) 및 73(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 · 개발전문기업</p> <p><집단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규모가 50인 미만인 서로 다른 기업의 공장이 2개 이상 집단화 하여 이전하는 경우 - 우리도의 전략산업인 IT · BT · NT 등 첨단업종에 한하여 지원

도내공장

◆ 도내 소재 공장

○ 지원대상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업(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지원대상

- 도내에서 3년 이상 공장을 가동중이고,
-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기업

관계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 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5. "외국투자가"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6의2.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라 함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①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장,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동법 제36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

-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용자, 토지 등의 임대료감면 및 분양가액인하(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금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기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보조금등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소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일 것
 - 나. 사업과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이거나 사업과 관련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구성된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20인 이상일 것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이하 "지방산업단지"라 한다)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방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2.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 외국인촉진법 시행령

제2조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⑤법 제2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 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3. 약사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국
4.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5. 그 밖에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27 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25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동항 제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 및 지정 목적

3.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4. 입주기업의 자격 및 주요 유치업종
5.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
6. 사업시행방법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5의6. “산업기반시설”이라 함은 용수공급시설, 교통·통신시설, 에너지 14. “공장의 신설”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 한다)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문화·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나. 지방산업단지 : 다음의 구분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 (1) 일반지방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2)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

성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농공단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1의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5. 국·공립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 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8.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 인증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9.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납부

3.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⑥ 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받은 전문기관은 납부받은 기술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우수연구·기술개발의 장려·촉진

2. 우수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

3. 진흥기금에의 산입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납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대부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조 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사. 제27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균형특별법

제19조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중 시·군·구별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낙후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균형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기업의 지방이전)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밀도
2. 광업·제조업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제조업사업체수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의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등)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통주점업, 무도유통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통음식점업 및 관광유통음식점업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각각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산업, 별표 3 및 별표 4의 산업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재료·제품·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기술정보비 등의 비용으로서 별표 5의 비용을 말한다.

④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명세서(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사용명세서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